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관세청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찰팀, 기획심사팀, 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1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.

<기획재정부 제공>

●행정안전부령 제46호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3월 20일

행정안전부장관 인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을 제8조의4로 하고,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)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화재경계지구 관리대상

[illegible]

364mm×257mm [(백상지 80g/m²) 또는 (종질지 80g/m²)]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시·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·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소방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.

<행정안전부 제공>

●행정안전부령 제48호

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3월 20일

행정안전부장관 인

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) ①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(이하 “외국인등”이라 한다)를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·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[외국인의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,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居所(居所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6조의2제7항제4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.

제2조의2 중 “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의2”를 “영 제12조의2”로 한다.

제13조제11항 본문 중 “병역사항 사항”을 “병역사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4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